

[한국실업축구연맹 상벌 규정]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실업축구연맹(이하 '연맹') 정관 제14조에 따라 징계와 포상의 적절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[대상 및 적용범위]

- ① 이 규정 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.
 - 1) 연맹에 등록된 클럽(이하 '클럽')의 감독 등 코칭스태프, 선수
 - 2) 각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
 - 3) 연맹 지휘 감독의 대상인 단체 및 개인
- ② 이 규정 중 포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제1항의 대상으로 국한하지 아니한다.
- ③ 징계 결정 당시 제1항의 신분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징계 규정을 적용하며,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분 보유 여부는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.

제3조 [설치 및 구성]

- ①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연맹에 상벌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상벌위원장(이하 '위원장')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며, 상벌위원(이하 '위원') 중에서 상벌부위원장(이하 '부위원장') 1인을 둔다.
- ③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은 축구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, 회장이 위촉한다.
- ⑤ 연맹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.

제4조 [임기 및 대행]

- ① 위원장의 임기는 4년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 또는 총원하는 경우 잔여임기를 수행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,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위원장이 위촉되기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.

제5조 [위원회 운영]

- ① 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, 2인 이상의 위원 또는 행정지원팀의 소집 요청, 징계 제소 접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

성으로 의결한다.

- 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, 사안이 경미 할 때에는 이를 서면(팩스, 이메일 포함)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,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조직(클럽 등)과 관련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조직 및 관련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.
- ⑥ 위원회는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현장검증이나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, 그 조사는 연맹 사무국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⑦ 제5항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6조 [제척 등]

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.

- 1) 위원장 및 위원이 안건 심의 대상자인 때
- 2) 위원장 및 위원이 안건 심의 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
- 3) 안건 심의 대상자가 공정한 안전 심의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기피 신청을 하거나 기타 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

제7조 [징계의 대상 및 사유]

- ① 각 클럽, 감독 등 코칭스태프, 선수, 연맹 임직원, 각 클럽 운영 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법령·정관 및 규정(이하 '법령 등')을 위반하거나, 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(이하 '협회'), 감독관청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여 한국실업축구의 위신을 손상케 한 경우, 연맹은 이들을 징계할 수 있다.
- ②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는 [별표1]과 같다.
- ③ 이 규정 적용 대상자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한국실업축구의 위신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언행을 하거나 기타 징계사유에 근접한 언행을 한 경우 회장은 그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의 촉구를 할 수 있다.
- ④ 비위자가 징계절차 개시 당시에 신원의 변동 등으로 제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, 연맹은 그에 대하여 리그 내 축구 관련직 종사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 [징계대상 행위의 성립과 처벌]

- ① 모든 징계는 그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시행한다.
- ② 징계대상 행위(이하 '비위사실' 또는 '비위행위')의 성립과 이에 대한 처벌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한다. 단, 비위행위 성립 후 법령 및 정관,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비위행위가 법령 등 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하거나 징계 양형 기준이 감경된 때에는 징계 결정 당시의 변경된 법령 등의 취지에 따른다.
- ③ 비위행위를 한 후 징계권한이 있는 기관에 자수 또는 자백한 때에는 그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④ 제소 또는 위원회가 심의할 사건은 비위행위 발생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건에 한한다. 단, 승부조작, 금품비리, 성범죄 관련 징계사항은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.

제9조 [징계 절차의 개시]

① 경기 감독관, 심판, 각 구단 대표자는 비위사실 발생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·소명하여 비위자를 상벌위원회에 징계 제소할 것을 연맹사무국에 청구할 수 있다.

② 연맹사무국은 제①항의 징계 제소 청구가 있거나 비위사실의 제보를 받거나 기타 경위로 제7조의 대상자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위사실을 조사·확인하여 상벌위원회에 징계 제소를 할 수 있다.

③ 제7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맹이나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무고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.

④ 위원장은 비위자 및 비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제소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비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연맹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고 연맹사무국은 조사결과를 상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 [징계의 대상별 종류]

① 구단에 대한 징계

- 1) 제명
- 2) 하위리그 강등
- 3) 자격 정지
- 4) 선수영입금지
- 5) 승점 감점
- 6) 경기 제한 : 무관중 홈경기 개최 또는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에서의 홈경기 개최
- 7) 제제금 부과
- 8) 응원석 폐쇄
- 9) 경고

② 개인에 대한 징계 (감독 등 코칭스태프, 선수 등)

- 1) 제명
- 2) 자격정지
- 3) 출전정지
- 4) 제재금 부과
- 5) 사회봉사명령
- 6) 경고

③ FIFA경기규칙, 대회규정 등에 따른 심판의 경고 및 퇴장명령, 경기몰수, 재경기, 경기 무효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와는 독립하여 효력을 갖는다.

④ 본 징계에 포함되는 않는 것은 FIFA, AFC,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 [징계 기준]

행위에 따른 유형별 징계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.

제12조 [조사권]

-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, 징계 대상자 및 비위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각 구단 등 관계자에게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경위서, 확인서 등 관련 서류나 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현장검증이나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, 그 조사는 연맹 사무국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13조 [출석 및 진술권의 부여]

- ①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개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유선 등을 통해 개최 1일전까지 통지 가능하다.
- ② 위원회가 징계를 심의, 의결할 때에는 징계 심의대상자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,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거나 서면 제출로 해명할 수 있다. 또한,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, 또는 징계 심의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 증인이나 관련자에 대한 위원회 출석이나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에 증빙자료, 기타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.
- ⑤ 징계심의대상자가 위원회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이용가능한 증거자료를 참고하여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.
- ⑥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가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 소속단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 [징계 양정]

- ① 징계 양정에 있어서 비위행위의 정도, 비위행위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행위 이후의 정황 및 징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가중 감경할 수 있다.
- ② 징계는 비위행위에 상응한 제재에 그쳐야 하고, 비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적 요소, 관련자의 반사적 이익·부수적인 불이익, 불공정한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③ 징계를 가중할 때에는 [별표1]에 정한 기준 상한선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.
- ④ 징계를 감경할 때에는 [별표1]에 정한 기준 하한선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.
- ⑤ 감경의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.
- ⑥ 다수의 비위자의 조직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.
- ⑦ 징계 양정은 출석 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.

제15조 [결과 통지 및 보고]

연맹은 징계의 결정이 있는 후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대상자 본인 및 소속단체의 대표자에게 즉시 통지한다.

제16조 [징계의 효력발생]

징계는 징계대상자가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7조 [재심의 청구]

- ①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징계 대상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경고 결정 및 긴급제재처분에 대한 사항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- ② 재심청구는 징계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.
- ③ 재심청구를 접수한 연맹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재심에 의한 징계의 확정은 연맹의 최종 결정이다.

제18조 [징계의 집행]

- ① 징계의 집행은 연맹 사무국이 집행한다.
- ② 재심청구로 징계결정은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 다만 회장은 사인이 중하거나 집행을 정지하면 징계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 사한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할 수 있다.
- ③ 제재금은 연맹이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- ④ 제재금 부과 결정 후 해당 시즌에 출전 경기가 없는 경우 시즌 종료일로부터 15일까지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 징계 결정의 집행은 당해 시즌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당해 시즌에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시즌으로 이월된다.

제19조 [징계 시효]

- ① 비위행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. 단, 승부조작, 불법 스포츠 도박, 금품 수수, 성범죄, 입학(입시)비리, 인종·정파 차별적 언행 관련 비위행위에는 징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.
- ② 비위행위자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 [징계의 감경, 해제 등]

- ① 징계의 집행 중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 중인 징계를 감경하거나 잔여 집행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.
- ②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일로부터 7년,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시일로부터 5년,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간

의 2분의 1 이상이 각각 경과해야 징계의 감경 또는 해제를 심의할 수 있다.

③ 징계의 감경 또는 해제는 대상에 따라 해당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건의하고, 이사회가 결정한다.

④ 사면권의 발의는 한국실업축구연맹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제21조 [포상]

연맹은 축구의 위상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인물과 단체에 포상을 실시한다.

제22조 [포상 심의]

연맹이 주최·주관하는 대회 관련한 포상은 성적에 따라 경기 조직·운영자가 심의하고, 경기외의 사유로 인한 포상 심의는 위원회가 심의한다.

제23조 [포상의 종류]

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) 각종 대회 성적에 따른 상
- 2) 포상금
- 3) 표창
- 4) 공로상
- 5) 감사상
- 6) 기타 연맹이 정하는 상

제24조 [추천]

① 연맹은 필요시 연맹 임직원, 구단 또는 관련 기관이 포상추천서에 의해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포상의 추천은 포상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연맹사무국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,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③ 위원회의 포상 심의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하게 포상 추천에서 누락된 자는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 [시행일]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 [준용]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축구연맹(FIFA), 아시아축구연맹(AFC),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준용한다.

[별표1]

유형별 징계 기준

유형	내용	대상 및 징계 기준			
		선수	지도자 또는 임원	구단	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/ 기타
1. 경기 중 일반적 위반행위	심판에 의한 경고 및 퇴장	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함			
2. 경기관련 특정 위반행위	가. 폭력 행위 ① 선수에 대한 폭력 ② 심판에 대한 폭력 ③ 지도자, 임원, 관중 등에 대한 폭력 ④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	· 10경기 이상 ~ 제명 ·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	경기제한, 벌금, 출전정지, 승점감점,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	형사고발 및 운동장 출입금지	
	나. 폭언, 모욕 및 위협행위	· 경고 이상 ~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·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	경고, 경기제한, 벌금, 출전정지, 승점감점, 하위리그 강등, 자격정지	형사고발 및 운동장 출입금지	
	다. 질서 위반행위 ① 경기장 무단 난입 ② 시설 및 기물 파괴 ③ 폭력조장, 선동 및 오물투척 ④ 관중석 난동 방조 ⑤ 건전한 응원 풍토 위반 ⑥ 과도한 판정항의	· 경고 ~ 1년 이하의 자격정지 ·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 · 경기장 파손시 시설물, 기물 원상 복구 및 변상	경고, 경기제한, 벌금, 출전정지, 승점감점, 하위리그 강등, 자격정지	형사고발 및 운동장 출입금지	

	<p>라. 경기규정위반행위</p> <p>① 대회불참 및 출전포기</p> <p>② 공식경기 개최 또는 진행 거부</p> <p>③ 공식경기 중단 및 재개지연</p> <p>④ 부정선수의 대회참가</p> <p>⑤ 출전정지선수의 경기출전</p> <p>⑥ 무자격 지도자 벤치 착석</p>	<p>· 경고 이상 ~ 무기한 자격정지</p> <p>·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</p>	<p>경고,</p> <p>경기제한,</p> <p>벌금,</p> <p>출전정지,</p> <p>승점감점,</p> <p>하위리그 강등,</p> <p>자격정지</p>	-
	<p>마. 경기관련조작</p> <p>① 승부조작</p> <p>② 불법배팅 등</p>	<p>· 2년 이상의 자격정지 ~ 제명</p> <p>· KFA 자격정지 혹은 제명 요청</p> <p>·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</p> <p>· 사회봉사명령</p>	<p>벌금,</p> <p>출전정지,</p> <p>승점감점,</p> <p>하위리그 강등,</p> <p>자격정지,</p> <p>제명</p>	-
	<p>바. 심판매수</p> <p>① 금품 및 향응 등의 제공</p> <p>② 금품·향응 등의 제공 약속 등</p> <p>③ 경기 전후 심판 접촉 및 시도 행위</p>	<p>· 1년 이상의 자격정지 ~ 제명</p> <p>· KFA 자격정지 혹은 제명 요청</p> <p>·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</p> <p>· 사회봉사명령</p>		-
	<p>사. 금지약물(도핑)행위</p>	<p>FIFA와 AFC의 도핑규정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방지규정을 준용함</p>		-
3. 명예실추행위		<p>· 6개월 출전정지 ~ 제명</p> <p>·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</p>	<p>벌금,</p> <p>출전정지,</p> <p>승점감점,</p> <p>하위리그 강등,</p> <p>자격정지,</p> <p>제명</p>	
4. 직권남용 행위, 무고 또는 위증행위		<p>· 1년 이상의 자격정지 ~ 제명</p>	<p>벌금,</p> <p>출전정지,</p> <p>승점감점,</p> <p>하위리그 강등,</p> <p>자격정지,</p> <p>제명</p>	-

5. 연맹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	가. 연맹의 정관 및 규정, 이사회 결정사항 위반 등	경고 ~ 제명	경고, 경기제한, 벌금, 출전정지, 승점감점, 하위리그 강등, 자격정지, 제명	-	
6. 성범죄(성폭력, 추행)		· 10경기 이상의 출전정지 ~ 제명 ·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	-	-	
7.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		· 10경기 이상의 출전정지 ~ 자격정지 3년 이하 ·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		-	
8. 정치적, 정파적, 인종차별적 행위 등		· 10경기 이상의 출전정지 ~ 자격정지 3년 이하 ·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	벌금, 출전정지, 승점감점, 하위리그 강등, 자격정지, 제명		
9. 선수계약 위반	가. 구단과 선수의 계약 위반 ① 이중 계약 또는 이면 계약 ② 계약금 지급 위반 등 ③ FA선수 교섭 기간 위반 ④ 기타 계약 위반	· 1년 ~ 5년 이하의 N리그 등록 금지 · 해당 구단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· 중개인 : KFA 징계요청	-	벌금, 승점감점, 선수영입금지, 해당 선수와 계약 금지	-
10. 기타	가. 기간 단위의 징계는 해당 기간 중의 진행되는 경기 수로 전환하여 처분할 수 있다. 나. 경기관련 특정위반행위의 경우 소속 등 경기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항도 그 대상이 된다. 다. 선수, 지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속 해당팀 지도자 및 해당팀이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팀 지도자 및 해당팀에 대하여도 관련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. 라. 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징계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. 마. 범죄행위로 인하여 본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죄로 판단된 사항의 경우는 명예실추행위를 적용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.				